

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발의일자: 2022. 11. 10.
- 발 의 자: 김종일 의원 외 4명
- 회부일자: 2022. 11. 11.
- 상정일자: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2.11.24.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김종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채은실)
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회의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회복지협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·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